

『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및 시설설치 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방법 신설
(안 제2조의2 및 별표 1)
-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신설
(안 제2조의3 및 별표 2)
- 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 결정주체 명확화(안 제3조)
- 그 밖에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조번호 개정
(안 제4조의2 및 안 제5조의2)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 은,

○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시행에 따라, 조성면적이 30만 m^2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폐기물 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은,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

- 부지매입단가는 개발대상의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m^2 당 조성원가로 산정하고,
-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, 주민편익시설,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의 합으로 하는 산정기준을 신설하고,

○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,

- 소각시설인 경우에는

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

1일 발생 예상 재활용 폐기물량 및 유기성 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,

－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

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·사료화 시설 설치비용 톤당
단가에 1일 발생 예상 유기성 폐기물 전량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
하는 내용으로서,

-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
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폐기물처리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
으로 판단됨.